

# 개발과 이슈

## SDGs 지표 확정과 의의<sup>1)</sup>

### 1. 지표의 수립

- 1) 지표의 수립과정
- 2) 지표 수립 관련 기구

### 2. 지표의 구성과 내용

- 1) 지표의 구성
- 2) 수립과정에서의 내용 변화

### 3.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1) 기존 지표의 수정
- 2) Tier III 개발 계획
- 3) 향후 IAEГ-SDGs 활동

#### 첨부자료: SDGs 지표확정안

2016년 3월 UN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 UNSC)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30의제)의 달성을 위한 17대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를 실천할 시작점으로 글로벌 지표체계를 수립하는데 합의했다. 동시에 탄탄하고 양질의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기관 간 및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AEГ-SDGs)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에도 합의했다.

3월 합의에 이어 IAEГ-SDGs는 지난 4월 UNSC가 합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글로벌 지표를 이행하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딛었다. 2016년 3월 UNSC의 합의와 4월/11월 IAEГ-SDGs의 향후 일정에 대한 발표는 SDGs를 이행해가는 퍼즐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한 것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의 지표체계와 지표와 세부목표 간의 불일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SDGs를 구성하는 마지막 퍼즐로서 SDGs 지표의 수립과정과 확정안을 소개하면서, 그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향후 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개발팀 김지현

1) 본 이슈는 김지현(2016)의 내용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 1. 지표의 수립

### 1) 지표의 수립과정

SDGs 지표 수립은 2015년 3월 구성된 IAEG-SDGs의 보고서를 UNSC가 승인하는 절차에 따라 확정되었다. 2015년 3월 Post-2015 개발의제를 글로벌 수준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IAEG-SDGs는 2015년 1차 회의에서 지표개발 및 분류 확정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지표 상호연계성 분석 및 데이터 세분화에 관한 원칙을 확인하였다(IAEG-SDGs 2016a). 이후 각 기관에서 제안된 지표제안서를 바탕으로 250-300여개의 지표체계를 검토하였고, 2015년 11월 버전의 제안서에는 지표분류를 Tier와 색깔로 구분하여 초안을 작성해갔다(IAEG-SDGs 2015). 초록-노랑-회색의 3개 그룹으로 나뉜 색깔 시스템에서 초록은 일반적으로 합의된(또는 작은 수정제안) 지표로서 공개 자문 과정에서 응답자 중 우려 및 심각한 재고 필요의견 피력이 25% 이하이면서, 회원국들의 심각한 반대(strong opposition)가 없고, 일부 지표는 이미 잘 수립이 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했다. 노랑은 해결되지 못한 이슈가 있거나 대안이 있는 경우, 회색은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방법론적인 개발도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여, IAEG-SDGs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회색(grey)'지표를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차 회의 직후 159개의 지표가 녹색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지표체계는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수차례의 자문(consultation)과 수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지표들은 색깔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합의'되었고, 현재 활용 가능한 지표와 개발이 되어야 하는 지표 등으로 분류-재분류를 반복해왔다. 다수의 지표들이 2015년 후반에 합의가 되었으나, 80개의 지표는 합의가 없거나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 표시가 달려있는 채로 최종제안서로 제출되었다(IAEG-SDGs 2015). 마지막 수정을 통해 대부분의 \* 표기 지표는 제안서대로 또는 약간 수정된 상태로 채택되었다.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 IAEG-SDGs는 2016년 3월 UNS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총 230개의 지표를 3개의 Tier로 확정하였다. 이후 2016년 4월 제3차 회의를 통해 향후 Tier III 지표에 대한 개발일정을 확정하고 지역-공간 정보 작업반(Working Group on Geospatial Information), 모니터링 통합분석을 위한 SDG 통계 상호연계 작업반(Working Group on Inter-linkages of SDG Statistics to allow for Integrated Analyses in the Monitoring), SDMX 작업반(Working Group on SDMX)를 구성하여 SDGs 지표의 모니터링과 활용 및 점검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 2) 지표 수립 관련 기구

IAEG-SDGs는 28개 국가<sup>2)</sup>의 국가통계기관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MDGs의 글로벌 이행보고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 및 지역기구, 지역위원회의 대표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기술자문 및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SDGs 수립과정의 기초에 따라 시민사회, 전문가 및 민간기업의 제안과 자문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이 지표의 개발과 혁신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IAEG-SDGs 2015).

IAEG-SDGs는 연 2회 IAEG-MDGs의 선례를 참고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지표와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UNSC에 보고 및 제안을 가장 큰 목적으로, 2030년까지 지표와 모니터링 체계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정기적인 지표의 방법론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점검, SDGs 이행을 위한 중간보고서(progress report)의 작성 및 발표, SDGs 통계 관련 각종 역량강화 활동 및 UNSC 사무국 주도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한 지원 및 대시보드 활동 점검과 지원 등을 주요 역할(mandate)로 규정하고 있다.<sup>3)</sup>

지표를 구성하는데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IAEG-SDGs와 함께 UNSC의 활동을 지원하는 Post-2015 모니터링을 위한 파트너십, 조정 및 역량강화 고위급그룹(High-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Building for Post-2015, HLG)이 있다. HLG는 IAEG-SDGs의 구성국과 겹치지 않도록 구성되며 현재 23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지표의 개발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는 IAEG-SDGs와는 달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역량강화와 지표관련 자원동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SDGs 이행과정 특히 통계 모니터링과 보고의 원활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리더십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HLG 2015).

이렇게 지난 1년 여간 개발되고 수립된 지표는 목표-세부목표-지표로 구성된 복층 구조를 완성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표를 살펴보면 아직도 전체 지표의 50%이상이 수정되거나 새로 개발이 되어야 하며, 내용적으로도 여전히 합목적성 이슈가 제기되는 등 앞으로도 당분간은 검토와 수정 과정에서의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2) IAEG-SDGs의 구성국은 지역을 고려하여 영국, 우간다, 탄자니아, 보츠와나, 카메룬, 카보 베르데, 세베갈, 알제리, 아르메니아, 바레인, 이집트, 중국, 인도, 키르기스탄, 필리핀, 피지, 사모아, 쿠바, 잠비아로 이루어 짐.

3) 좀 더 자세한 역할과 활동영역에 관한 정보는 <http://unstats.un.org/sdgs/iaeg-sdgs/> 참조.

## 2. 지표의 구성과 내용

### 1) 지표의 구성

실제 각각 세부목표별 제시된 지표는 총 241개이다. 이 중 7.a.1/13.a.1, 8.4.1/12.2.1, 8.4.2/12.2.2, 10.3.1/16.b.1, 10.6.1/16.8.1, 15.7.1/15.c.1, 15.a.1/15.b.1, 1.5.1/11.5.1/13.1.2, 1.5.3/11.b.2/13.1.1과 같이 2-3개의 중복적인 지표를 제외하면 총 230개의 지표가 확정되었다. 확정된 230개의 지표는 크게 3개의 Tier로 분류되어있다. Tier I은 통계방법론이 수립되어있고(established) 데이터가 이미 쉽게 얻어질 수 있는(widely available) 지표, Tier II는 방법론은 수립되어 있으나, 데이터를 얻기 쉽지 않은(not easily available) 지표, Tier III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internationally agreed methodology)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not yet been developed) 지표들을 의미한다(UNSC 2016a).

〈표 1〉 목표 별 지표 Tier의 구성

목표	목표내용	Tier I	Tier II	Tier III	다중
1	빈곤	2	6	4	
2	기아	6	3	5	
3	보건	13	9	4	
4	교육	2	5	3	1
5	양성평등	2	6	5	1
6	물	5	1	5	
7	에너지	4	0	2	
8	일자리	10	5	2	
9	산업	8	1	3	
10	불평등	4	0	6	1
11	도시	1	7	7	
12	SCP	1	1	11	
13	기후변화	0	2	5	
14	해양생태계	2	0	8	
15	육상생태계	2	5	5	2
16	거버넌스	6	9	9	
17	파트너십	15	2	2	
전체		81 (35.2%)	57 (24.8%)	88 (38.3%)	4 (1.7%)

출처: IAEГ-SDGs(2016b)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지표의 35.2%만이 Tier I에 해당하고, 50% 이상의 지표가 Tier II와 III에 해당되어 향후 완전히 개발이 되어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sup>4)</sup> 또한 지표의 Tier 구성은 목표들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목표 3, 8, 9의 경우 Tier I의 비중이 높으나, 목표 13의 경우 Tier I 지표가 전무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련 목표 12, 기후변화 목표 13, 해양생태계 목표 14의 경우 Tier III의 비중이 높아 동 목표들의 국제적 비교 및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데이터 구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sup>5)</sup>

아직 개발되어야 하는 지표가 다수 있다는 것은 비교를 해야 할 기초선 설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타 Tier I/II 지표 가운데 데이터 접근성이 제한적인 지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230개의 지표 세트는 완성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수립과정에서의 내용 변화

또한 지표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변화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것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유산(遺産),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의 지표로 2015년 12월 제안서에서는 [지표 1.4.1 기초서비스 접근성이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비율] 만이 제안되었으나, 확정된 지표에서는 [지표 1.4.2 성별, 토지권 종류별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가졌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여기는 성인인구비율<sup>6)</sup>]이 추가되어 세부목표가 추구하는 ‘동등한 권리’에 대한 강조를 지표의 추가로서 강화하고자 했다.

4) 처음 발표되었던 2016년 3월 안(AEG-SDGs 2016a)에서는 Tier I이 41%였으나, 이후 조정된 값을 반영하였음.

5) Tier와 지표의 데이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수진(2016) 참조.

6) Proportion of total adult population with secure tenure rights to land, with legally recognized documentation and who perceive their rights to land as secure, by sex and by type of tenure

또 다른 예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세부목표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의 지표로 기존에 제시되었던 언론과 표현에 대한 억압을 측정하려 했던 [지표 16.10.1 지난 12개월 간 언론인, 언론 관계자, 노조 활동가, 인권운동가에 대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의 수] 이외에도 제도적 장치를 통한 기본적 자유 보호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16.10.2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위해 헌법상, 법적이거나 정책적인 보장방식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sup>7)</sup>]가 추가되는 등 세부목표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완되는 등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수정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변경사항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수정사항 중 일부는 오히려 세부목표의 의도를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 부패와 뇌물 근절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히 감축]의 지표로 [지표 16.5.1 공무원에 뇌물을 요구 받거나 뇌물을 공여해본 적이 있는 인구 비율]로 확정되어 기존 안에서 ‘연령, 성별, 지역, 인구그룹’별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이 삭제되었다. 이는 뇌물의 요구 및 공여를 통해 부패 문화를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거나, 사회 구성원 중 누가 뇌물요구에 취약한 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부패와 부패영향의 사회적 불평등성을 측정할 수 없어진 한계를 보인다.

또한 국내적 불평등 부분에 있어서도 2015년 2월 IAEG-SDGs 제안안에는 포함되어있던 지니계수 및 팔마비율(Palma ratio)등이 삭제되고,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실질가처분 소득 및 소비 기준 인구분포가 ‘하위 40%인구의 일인당 소득’을 보는 것<sup>8)</sup>으로 확정되었다. 국내의 소득불평등 해소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SDGs의 핵심가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하위 40%의 일인당 소득의 비교는 글로벌 모니터링은 가능하게 하나, 실제 소득불평등 논의에서 다루어 져야할 부유층 특히 상위 1-10% 인구에 대한 측정 및 이에 대한 정책논의도 사라지게 되어 소득불평등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결국 제한적인 정책옵션을 제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7) Number of countries that adopt and implement constitutional, statutory and/or policy guarantees for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8) 10.1.1 Growth rates of household expenditure or income per capita among the bottom 40 per cent of the population and the total population

### 3.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 1) 기존 지표의 수정

IAEG-SDGs가 지표를 논의하는 회기 동안에서 회원국들이 제안한 지표의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검토할 것을 주문한 제47차 UNSC 의결에 따라 IAEG-SDGs는 2016년 9월 19-28일 간 제한된 숫자의 지표에 대해 공개 자문을 실시하였다. 동 자문은 IAEG-SDGs 옹저버 및 국가, 지역,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민간기업 등 기타 이해관계자에게도 공개되어 진행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던 SDGs 수립과정을 상기시킨다.

지표에 대한 검토는 크게 개선(refinement)과 수정(revision)의 2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우선 개선은 연례검토를 통해 변경되는 것으로 ① 측정단위를 구체화하거나 수정하는 것 ② 지표상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 ③ 단순 오타 수정 ④ 여러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표를 분리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수정은 ① 지표가 세부목표의 특정부분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추가하거나 ② 시계열 상의 혼선을 야기할 경우 삭제 또는 변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선과 수정의 결정과정은 IAEG-SDGs 또는 하나 이상의 관리기관(custodian agency)에 의해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IAEG-SDGs와 관리기관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검토과정을 통해 매년 개최되는 UNSC 개선여부를 결정한다. 수정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활용 가능해졌거나, 의미있는 측정치를 주지 못할 때, 그리고 방법론상의 이슈가 있을 때 행해진다. 수정안의 경우 UNS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자문 과정을 거쳐 2020년 및 2025년 검토 과정에서 UN통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2016년 9월 첫 번째 개선에 대한 공개자문 과정이 시행되었다.

〈표 2〉 개선이 검토되고 있는 지표

확정안		개선검토안
1.a.1	정부가 빈곤경감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할당 한 자원의 비율	빈곤경감프로그램에 지원된 전체 무상원조, 해외직 접투자 및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유입액의 총액
2.b.1	농업생산자 지원 추정치 비율	농업생산에 대한 수출입 관세 비율 변화
3.8.2	인구 1,000명당 의료보험이나 공중보건 시스 템으로 보장받는 인구 수	전체 가구지출 또는 소득에서 보건부문 가구지출 이 높은(예: 전체 지출의 25% 이상) 인구 비율
3.b.1	저렴한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 이 가능한 인구의 비중	1) 국가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국가 및 지역단위 백 신 보급 2) 필요한 의약품이 완비되어있는 보건시설의 비율
5.6.2	성적/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49세 여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법률 및 규 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수	성적/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49세 여성과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법률 및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수
7.a.1	천만불 약정을 목표로 2020년부터 매년 동원 되는 금액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기술에 투자되는 공공 및 민 간 자금 총액
8.8.2	성별, 이민신분별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반 한(단체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노동 권의 국내적 보장 증대	성별, 이민신분별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반한(단 체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노동권의 국내 적 보장 수준
8.9.2*	성별 전체 일자리에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으 로서 일자리의 수와 일자리 증가율	-
8.b.1	국가예산과 GDP에서 전체 사회보호 및 고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정부지출 비율	국가예산 중 전체 사회보호 및 고용 프로그램에 사 용되는 정부지출 총액
16.4.2	국제기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기록 및 관리되 고 있는 압류 소화기(small arms) 및 경화기 (light weapons)	국제기준, 조약 및 법적 근거에 따라 표기, 기록, 제 거되고 있는 압류하거나, 발견되거나 투항한 소화 기(small arms) 및 경화기(light weapons)의 비중

\* IAEG는 “지속가능 관광과 현지 생산 활용”부문을 좀 더 명확히 하기를 원하나 현재 구체적인 제안내용 없음.

출처: IAEG-SDGs(2016d)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2〉는 공개자문 기간 동안 검토되었던 지표의 확정안과 개선검토안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지표 1.a.1]의 경우 IAEG-SDGs는 동 개선검토안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빈곤경감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국내 자원동원과 해외 자본의 유입 양쪽에서 측정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리며, 현재의 지표와 개선검토안을 모두 포함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지표 8.9.2]의 경우는 개선에는 모두 동의하나 제안된 개선안 중에서 IAEG-SDGs가 원했던 “지속가능 관광과 현지 생산활용”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제안은 없었다고 표기하는 등 개선이 가능한 지표의 목록을 우선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9월에 진행된 이번 공개자문에 특정 지표나 제안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자동으로 개선안에 반영이 되어 UNSC에 상정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IAEG-SDGs는 이러한 제안들을 검토하고, 개별적인 개선안이 전체 SDGs 지표 내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를 UNSC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6년 11월에 개최된 IAEG-SDGs 4차 총회에서 동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개선과정은 1년에 한번씩 IAEG-SDGs 주도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제4차 회의에서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지표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세부 목표로 <Box 1>의 목록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Box 1> 추가 지표개선 세부목표 목록

• 1.a	• 3.4	• 4.1 (2)	• 8.5	• 9.2	• 12.4	• 16.3
• 2.2	• 3.5	• 4.b	• 8.7	• 10.2	• 12.6	• 16.6
• 2.a	• 3.6	• 6.4	• 8.9	• 10.3	• 14.4	• 16.10
	• 3.9 (3)	• 7.1	• 8.10	• 10.4	• 14.7	• 17.6
	• 3.b			• 10.7	• 15.a	• 17.8
	• 3.c					• 17.19

출처: IAEG-SDGs(2016e: 3)

그러나 연중 검토되는 부분적 변경(minor change)이나 개선 이외의 종합적인 수정(comprehensive revision)은 2020년과 2025년 UNSC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0년과 2025년 검토에서 다루어질 변경은 주로 1) 세부목표를 잘 보여주지 못하는(does not map) 지표; 2) 세부목표의 모든 요소를 반영할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지표; 3) 새로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가 있는 경우; 4) Tier III 지표의 방법론 개발이 지연되거나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때; 5) 지표가 세부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루어질 예정이다(IAEG-SDGs 2016e).

이러한 종합적인 수정은 2020년의 경우 2018년 가을부터, 2025년의 경우 2023년 가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UNSC에 수정안이 각각 2019년 말과 2024년 말에 상정될 예정이다. IAEG-SDGs는 수정과정에서 관리기관과의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지표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개자문을 통해 개선안을 취합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출된 결과와 제안서는 IAEG-SDGs 회의에서 대중에 공개될 것이며, 이 후 UNSC 승인 과정을 통해 지표 변경을 확정하게 되는 연중 개선안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나 좀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

## 2) Tier III 개발 계획

2016년 7월 IAEG-SDGs는 Tier system을 완성하여 발표하였으며, 9월까지 데이터 수집과 생성의 주체가 되는 국제기구가 제안한 Tier III 관련 방법론 개발계획을 확정하였다. 이후 IAEG-SDGs는 Tier III 지표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작업계획(work plan)을 각 지표의 방법론 개발과 글로벌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등 관리기관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표 3>은 동 온라인 자문기간 동안 제출된 개발계획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는데, 여전히 상당수의 Tier III 지표가 관리기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거나,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발계획을 제출되지 않았다.

<표 3> Tier III<sup>9)</sup> 개발일정

지표 번호	내 용	개발 기관	데이터 주기	개발 일정
1.4.2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가졌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있다고 여기는 성인인구비율 (성별, 토지권 종류별)	UN Habitat, World Bank	3-5년	2017.10
1.5.1	100,000명당 재난영향으로 사망 및 실종 인구수	UNISDR	1년	2016.12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UNISDR	1년	2016.12
1.5.3	국가 및 지방정부 단위의 재난위험경감 전략 보유국 수	UNISDR	2년	2016.12
2.3.1	농업/낙농업/산림업 규모에 따른 계층별 노동 생산량	FAO	1-5년	2017.06
2.3.2	성별 및 원주민 지위별 소규모 식량생산 평균소득	FAO	1-5년	2017.06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하의 농업지역 비율	FAO	-	2016.12
2.5.1	중기 또는 장기 보호시설로 보전된 식량과 농업을 위한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	FAO	2년	-*
3.5.1	물질 남용 장애 치료(약물, 신경, 재활, 사후서비스 등) 범위	UNODC, WHO	2-3년	2018.12
3.8.1	(재생산, 모성, 신생아, 아동보건, 감염병, 비전염성 질병, 보건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을 포함한 추적 개입에 기반한 필수 서비스의 평균 보급률로 정의되는) 필수 보건서비스의 보급률	WHO	1-5년	2017.02

9) 이외에 개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표는 1.4.1(관리기관부재), 1.a.1(관리기관 미확정/세계은행), 1.b.1(관리기관부재), 2.c.1(관리기관 미확정/FAO), 5.a.2(관리기관 미확정/FAO, 세계은행, UN Women), 8.b.1(관리기관 미확정/ILO), 12.a.1(관리기관 미확정/UNEP, UNESCO, 세계은행, OECD), 12.c.1(관리기관 미확정/UNEP), 14.7.1(관리기관부재), 15.a.1/15.b.1(부분 Tier III)(관리기관 미확정/OECD, UNEP, 세계은행), 16.7.1(관리기관부재), 17.6.1(관리기관 미확정/UNESCO), 17.7.1(관리기관 미확정/OECD, UNEP), 17.13.1(관리기관 미확정/세계은행), 17.18.1(관리기관 미확정/UNSD) 등으로 주로 지표확정 시 관리기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거나, 가능한 기관을 명시하기는 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음. 미확정\*는 가능한 기관명.

지표 번호	내 용	개발 기관	데이터 주기	개발 일정
3.8.2	인구 1,000명당 의료보험이나 공중보건 시스템으로 보장받는 인구 수	WHO	1-5년	2017.05
3.b.1	저렴한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이 가능한 인구의 비중	WHO	1년	-
4.1.1	(a) 학년 2/3 이수시점, (b) 초등졸업, (c) 고등교육 저학년 이수 시점에서 읽기와 수학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중(성별)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	3-5년	2019.06
4.2.1	보건, 학습, 심리적 건강(well-being)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미만 아동의 비중(성별)	UNICEF	2-4년	2017.11
4.7.1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i)글로벌시민의식 교육과 (ii)지속가능발전 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학생 평가의 모든 차원에 주류화 되어 있는 정도	UNESCO Sec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ED/IPS/ESG)	4년	2016
5.1.1	양성평등과 반차별을 증진하고 강제하며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UN Women	2년	2017
5.5.1	의회와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UN Women	-	2017
5.6.2	성적/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49세 여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법률 및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수	UNFPA	4-5년	2016.12
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및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중	UN Women	-	2017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수 비율	UNSD	2년	-
6.3.2	양호한 주변 수질을 갖춘 수계 비율	UNEP	1년	2016.12
6.4.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사용 효율 변화	FAO	1-2년	2016.12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체계를 가진 초국적 유역비율	UNESCO-IHP, UNECE	3년	2017.03
6.6.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UNEP	2-3년	2017.03
7.b.1	GDP의 비율로 측정되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및 지속가능개발서비스인프라와 기술을 위한 금융거래 해외직접투자 규모	IEA	-	-
8.4.1	물질발자국(MF), GDP 대비 및 1인당 MF	UNEP	1년	2020
8.4.2	국내물질소비(DMC), GDP 대비 및 1인당 DMC	UNEP	1년	2020

지표 번호	내 용	개발 기관	데이터 주기	개발 일정
9.1.1	사계절도로(all season road)로 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농촌인구 비율	World Bank	3-5년	-
9.3.1	전체 산업부가가치 중 중소기업의 비중	UNIDO	1년	2017
9.3.2	용자가 있거나 여신한도를 보유한 중소기업 비율	UNIDO	1년	2017
10.2.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중간소득의 50%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의 비율	World Bank	-	-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차별받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reporting) 인구의 비율	OHCHR	1년	2018.12
10.5.1	금융건전성지수	IMF	분기별	-
10.7.1	이민국에서의 연소득 중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채용비용	World Bank	1년	2016.07
10.7.2	잘 관리되는 이민정책을 이행해 온 국가의 수	UNDES, IOM	1-4년	2016.12
10.c.1	송금총액에서 송금비용의 비율	World Bank	분기별	-
11.3.2	정기적이고, 인구구성비에 맞추어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구조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비율(%)	UN-Habitat	2년	2017.08
11.4.1	유산의 종류(문화, 자연, 복합, 세계유산센터 등재), 정부 수준(중앙, 지역, 시군), 지출종류(운영비/투자) 및 민간자금 종류(기부, 민간 비영리, 스폰서) 등에 따라 분류된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보호에 지출되는 1인당 총(공공 및 민간) 지출액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1년	2017.12
11.5.1	인구 100,000당 재난의 영향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수	UNISDR	1년	2016.12
11.5.2	주요 인프라에 대한 재난피해 및 기초서비스 붕괴를 포함하여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UNISDR	1년	2016.12
11.7.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되어있는 공용 공간의 평균 비중	UN-Habitat	2년	2017.06
11.7.2	성별, 연령별, 장애의 정도 및 발생장소 별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추행의 피해자비율	UNODC	1년	2018.12
11.a.1	인구증가에측과 소요자원을 통합하여 수립된 도시 및 지역 개발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도시규모별)	UN-Habitat	1년	2016.09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2015-2030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궤를 같이 하는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UNISDR	2년	2016.12
11.b.2	국가 전체와 지방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보유한 국가의 수	UNISDR	2년	2016.12

지표 번호	내 용	개발 기관	데이터 주기	개발 일정
11.c.1	최빈국 내 현지 자재들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효율적인 건축과 재건축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규모	UN-Habitat	3년	2017.08
12.1.1	지속가능소비 및 생산(SCP) 국가이행계획 또는 국가정책에 우선순위 및 목표로 SCP가 주류화되어있는 국가의 수	UNEP	1년	2020
12.2.1	물질발자국(MF), GDP 대비 및 1인당 MF	UNEP	1년	2020
12.2.2	국내물질소비(DMC), GDP 대비 및 1인당 DMC	UNEP	1년	2020
12.3.1	글로벌 식품손실 지수	FAO	1년	2016.12
12.4.2	인당 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처리방법	UNEP, UNSD	2년	2017.12
12.5.1	국가 전체의 재활용비율(ton)	UNEP, UNSD	2년	
12.6.1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UNEP, UNCTAD	1년	Phase1: 2016.12 Phase2: 2020.12
12.7.1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정책과 실행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	UNEP	3년	2016.12
12.8.1	(i)글로벌 시민교육과 (ii)기후변화교육을 포함한 지속가능개발 교육이 국가 (a)교육정책, (b)교과과정, (c)교사 교육 및 (d)학생 평가에 주류화 정도	UNESCO Sec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ED/IPS/ESG)	4년	2016
12.b.1	모니터링과 평가 기제가 있는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정책, 이행된 실행계획의 수	UNWTO	1년	2017.6
13.1.1	인구 100,000당 재난의 영향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수	UNISDR	2년	2016.12
13.1.2	국가 전체와 지방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보유한 국가의 수	UNISDR	1년	2016.12
13.2.1	식량생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회복력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된 정책/전략/계획(국가적응계획, 국가적으로 결정된 기여금, 국민소통, 격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보고서 등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운용하는 것에 관해 논의해온 국가의 수	UNFCCC**	-	-
13.3.1	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 경보 등을 초등, 중고등, 상급 교육과정에 통합한 국가의 수	UNFCCC**	-	-
13.3.2	완화, 적응, 기술이전, 개발 이행을 위한 제도, 시스템, 개인의 역량강화를 논의해 온 국가의 수	UNFCCC**	-	-
13.a.1	2020년까지 1,000억달러 동원	UNFCCC/OECD	-	2020

지표 번호	내 용	개발 기관	데이터 주기	개발 일정
13.b.1	여성, 청소년, 지방,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하에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매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기술, 역량강화를 비롯한 특화된 지원을 받고 있는 최빈국 및 중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수	UNFCCC	1년	-
14.1.1	해안부영양화 지수(ICEP) 및 플라스틱 부유성 폐기물 농도	UNEP in cooperation with IOC-UNESCO	2년	2017.12
14.2.1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UNEP in cooperation with IOC-UNESCO	3-4년	2020
14.3.1	합의된 대표시료채취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pH)	IOC-UNESCO in cooperation with UNEP	2년	2020
14.6.1	국가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기제들을 이행 차원에서의 진척수준	FAO	2년	2017
14.a.1	전체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분야 연구에 배정되는 비율	IOC-UNESCO in cooperation with UNEP	5년	2017.12
14.b.1	국가별 소규모 영세 어업의 접근권(access rights)을 인지하고 보호하는 법/규제/정책/제도의 도입 차원에서의 진척 수준	FAO	1-2년	2017.06
14.c.1	해양과 그 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법/정책/제도를 통해 UNCLOS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해양관련 장치들을 비준, 적용,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의 수	IMO CBD 사무국	항시	개발완료
15.2.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진척도	FAO	5년	2016.12
15.3.1	전체 육지 중 황폐화된 토지의 비율	UNCCD	4년	2017.03
15.3.1 (보완)	토양유기탄소의 세부요소	FAO	-	2017
15.6.1	공평하고 공정한 혜택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한 국가의 수	CBD 사무국	-	2016
15.8.1	급속히 확산되는 외래종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법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배분한 국가의 비율	IUCN	2년	2016.12
15.9.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2(Aichi Biodiversity Target 2)에 따른 국내 목표 수립 진척상황	CBD 사무국	-	2018.12
16.1.2	성별, 연령별, 원인별 인구 100,000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	OHCHR	1년	2017.12
16.2.1	지난 1개월 동안 보육자로부터 신체적 처벌이나 정신적 공격을 경험한 바 있는 1-17세 아동/청소년의 비율	UNICEF	2-4년	2017.11

지표 번호	내 용	개발 기관	데이터 주기	개발 일정
16.4.1	불법자금의 유입과 유출의 총 가치(현재 US\$ 가치 기준)	UNODC	1년	2019.06
16.6.2	가장 최근 이용했던 공공서비스에 만족한 인구비율	UNDP	1년	2017.12
16.7.2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인구집단별 의사결정과정에서 포용적이고 수용적이라고 믿는 인구비율	UNDP	1년	2017.12
16.10.1	지난 12개월 간 언론인, 언론 관계자, 노조 활동가, 인권운동가에 대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의 수	OHCHR	1년	2017.12
16.b.1	국제인권법 상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차원에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음을 신고한 인구비율	OHCHR	1년	2018.12
17.5.1	최빈국에 대한 투자촉진 환경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UNCTAD	1년	-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매커니즘이 있는 국가의 수	UNEP	5년	2020
17.17.1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약정한 US\$ 총액	World Bank	6달	-
17.18.2	국가통계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에 따른 국가통계 법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수	PARIS21	1년	-

\* IAEG-SDGs의 개발계획 설문 문항에 대해 답변없음.

\*\* UNFCCC와 파리협정 의무조항임을 명기하여, 협정이 지켜질 경우 지표개발 및 데이터 수집 가능

출처: IAEG-SDGs(2016c)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많은 경우 2016년 말 또는 2017년 말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기관들은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의 경우는 2020년이 되어야 완성된 지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Tier III 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환경분야(예: 목표13과 14)에서 지표 개발은 2020년 또는 개발시한을 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계획을 제출하여 실제 전면적인 글로벌 데이터 리뷰가 2030년 내에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발계획 자체가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Tier III의 상당 부분이 2020년 또는 2025년 검토에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계획 상 데이터 수집 주기역시 분기에서 최장 5년 단위로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계획대로라면 [지표 17.14.1]은 2020년 방법론이 완성되어 5년 단위로 보고하게 되면 15년 간의 SDGs 기간 동안 2-3번의 글로벌 모니터링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기존에 글로벌 지표를 활용하는 세부목표와 이렇게 새로 개발되어 데이터 수집 횟수가 제한적인 지표들 간의 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리라 예상되는 대목이다.

### 3) 향후 IAEG-SDGs 활동

2014년 UN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혁명에 관한 독립 전문가 자문그룹 (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on a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AEG-DR)”을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관한 제안을 주문했다. IAEG-DR의 결과보고서는 데이터 격차와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와 기타 개발파트너가 “주요 격차를 줄이고 데이터 사용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다(UN Data Revolution Group 2014:5).

SDGs의 지표 확정은 단순히 목표-세부목표-지표의 다층적 구조를 완성시키는 퍼즐조각 (missing puzzle)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 활용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직은 내용적인 면이나 체계 면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난 15년간 MDGs가 그러했듯이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지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우선 당장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는 IAEG-SDGs는 Tier III 지표에 대한 개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UNSC에 제출할 배경문서(background document)를 작성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2017년 2월까지 글로벌지표에 대한 데이터 세분화 범주(categories)를 조정하며, 동 해 3월까지 5차 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Tier III 중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는 지표들을 우선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후 2017년 3월에서 2018년 3월 사이 IAEG-SDGs는 Tier III 지표에 대한 개발계획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시 Tier 재분류를 위한 검토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기적인 활동 이외에도 IAEG-SDGs와 HLG는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Tier I 및 Tier II 지표에 대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Tier II의 데이터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IAEG-SDGs 2016f).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종지표 확정 이후에도 개별지표 및 전체 지표체계에 관한 점검은 계속될 예정이며, 특히 2020년과 2025년 검토에서 지표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를 예고하고 있어, 5년 주기의 이행상황에 따른 지표의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SDGs 관련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이행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김수진. 2016. "SDGs 지표의 데이터 이용가능성 분석", 국제개발협력, 2016(2):79-113.
- 김지현. 2016. "SDGs 지표 체계와 모니터링 : 불평등성 완화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6(2):3-14.
- HLG. 2015. Terms of reference for the High-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Building for post-2015 monitoring
- IAEG-SDGs. 2015. "Terms of reference for the Inter-agency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30 Mar - 1 Apr 2016 Mexico City, Mexico([http://unstats.un.org/files/IAEG-SDGs%20-%20Terms%20of%20Reference%20\(April%202015\).pdf](http://unstats.un.org/files/IAEG-SDGs%20-%20Terms%20of%20Reference%20(April%202015).pdf), 접속일: 2016.7.1)
- \_\_\_\_\_. 2016a.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Background Document for the 3rd Meeting of IAEG-SDGs, (<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접속일: 2016.7.1).
- \_\_\_\_\_. 2016b.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s Indicators as of 10 November 2016. Background Document for the 4th Meeting of IAEG-SDGs", 15 - 18 Nov 2016, Geneva, Switzerland(<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4/Updated%20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2010-11-16.pdf>, 접속일: 2016.12.1).
- \_\_\_\_\_. 2016c. "Work Plan for Tier III Indicators", Background Document for the 4th Meeting of IAEG-SDGs, 15 - 18 Nov 2016, Geneva, Switzerland(<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4/Tier%20III%20Work%20Plans%2011.11.2016.pdf>, 접속일: 2016.12.1).
- \_\_\_\_\_. 2016d. "Agenda Item 9. Refinements of Indicators", Provisional Agenda for the 4th Meeting of IAEG-SDGs, 15 - 18 Nov 2016, Geneva, Switzerland(<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4/9.%20Refinement%20of%20Indicators%20plenary.pdf>, 접속일: 2016.12.1).
- \_\_\_\_\_. 2016e. "Agenda Item 9. Refinements of Indicators and Future Revisions to the Indicator Framework: Additional Indicators", Provisional Agenda for the 4th Meeting of IAEG-SDGs, 15 - 18 Nov 2016, Geneva, Switzerland(<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

- iaeg-sdgs-meeting-04/9.%20Additional%20Indicators%20plenary%20final.pdf, 접속일: 2016.12.1).
- \_\_\_\_\_. 2016f. "Work Plan and Next Steps", Presentations for the 4th Meeting of IAEG-SDGs, 15 - 18 Nov 2016, Geneva, Switzerland([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4/13.%20Work%20Plan%20and%20next%20steps\\_plenary.pdf](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4/13.%20Work%20Plan%20and%20next%20steps_plenary.pdf), 접속일: 2016.12.1).
- Lucks, Dorothy, Thomas Schwandt, Zenda Ofir, Kassem El-Saddik and Stefano D'Errico. 2016. Counting Critically: SDG 'follow-up and review' needs interlinked indicators, monitoring and evaluation, Briefing, London: IIED(<http://pubs.iied.org/17363IIED>, 접속일: 2016.7.1)
- Statistics Divisions of UN/DESA and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5. Results of the UNSD/UNECE Survey on organizational context and individual projects of Big Data, Background document, UN Statistical Commission Forty-sixth session(<http://unstats.un.org/unsd/statcom/doc15/BG-BigData.pdf>, 접속일: 2016.7.1)
- UN Data Revolution Group. 2014. A World that Counts: Mobilizing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ical Report, UN Data Revolution Group(<http://undatarevolution.org/wp-content/uploads/2014/11/A-World-That-Counts.pdf>, 접속일: 2016.7.1)
- UN General Assembly.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A/RES/70/1).
- UN Statistical Commission. 2015. Report of the High-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Building for Post-2015 Monitoring(E/CN.3/2016/3)
- \_\_\_\_\_. 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E/CN.3/2016/2/Rev.1)

## 첨부자료: SDGs 지표확정안<sup>10)</sup> (2016.11 현재)

###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현재 하루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측정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극빈(極貧)을 2030년까지 근절

**1.2**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비율을 2030년까지 최소 절반으로 감축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유산(遺産),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기후관련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축

**1.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게 모든 측면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1.b** 빈곤 퇴치 행동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 인지적인 개발전략에 기초하여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체계를 창출

**1.1.1** 성별, 연령별, 고용상태 및 도시/농촌 등 지역별로 세분화된 세계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비율 [1]

**1.2.1** 성별 및 연령별로 세분화된 국별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비율 [1]

**1.2.2** 국별로 정의된 모든 측면에서 빈곤 상태의 전 연령대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2]

**1.3.1** 성별 및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신생아, 산재 피해자, 빈곤계층과 취약계층별로 세분화되는, 사회보호 안전망/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는 인구 비율 [2]

**1.4.1** 기초서비스 접근성이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비율 [3]

**1.4.2**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가졌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있다고 여기는 성인 인구비율(성별, 토지권 종류별) [3]

**1.5.1** 100,000명당 재난영향으로 사망 및 실종 인구수 [2]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2]

**1.5.3** 국가 및 지방정부 단위의 재난위험경감 전략 보유 국 수 [2]

**1.a.1** 정부가 빈곤경감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할당한 자원의 비율 [3]

**1.a.2** 핵심서비스(교육, 보건, 사회보호)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 [2]

**1.b.1** 여성,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혜택을 돌리는 섹터에 배당된 정부의 운영 및 자본지출 비중 [3]

10) 공식 원본은 [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list/](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list/) 참조. 동 번역은 SDGs 지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공식번역본은 아님을 밝힘.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도록 보장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 증대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이행

**2.5** 2020년까지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 은행 등을 통하여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대한 접근을 진흥

**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서 농업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사회 기반시설, 농업 연구와 지도사업, 기술 개발과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를 증대

**2.b.** 도하개발라운드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조치의 병행 제거 등을 통하여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교정하고 예방

**2.1.1** 영양부족 현황 [1]

**2.1.2** 식량 불안 경험척도(FIES) 기준, 보통 또는 그 이하의 식량 불안 인구현황 [1]

**2.2.1** 5세 이하 유아의 발달저해 현황(연령별 신장: WHO 아동성장기준 중간값으로부터 표준편차 -2 미만) [1]

**2.2.2** 5세 이하 유아의 종류별(소모성, 과체중) 현황(신장별 체중: WHO 아동성장기준 중간값으로부터 표준편차 -2 미만 또는 +2초과) [1]

**2.3.1** 농업/낙농업/산림업 규모에 따른 계층별 노동 생산량 [3]

**2.3.2** 성별 및 원주민 지위별 소규모 식량생산 평균소득 [3]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하의 농업지역 비율 [3]

**2.5.1** 중기 또는 장기 보호시설로 보전된 식량과 농업을 위한 동식물 유전자원의 수 [3]

**2.5.2** 멸종위험 여부에 따라 분류된 지역품종 [2]

**2.a.1** 농업지향지수(정부지출 중 농업비중) [2]

**2.a.2** 농업섹터에 지원된 전체 공적자금(ODA 및 기타 공적자금) [1]

**2.b.1** 농업생산자 지원 추정치 비율 [2]

**2.b.2** 농업수출보조금 [1]

**2.c** 식료품시장과 동 시장 파생상품의 적절한 기능을 확보하고, 극심한 식량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식량비축분 등에 관한 시장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2.c.1** 식량가격 이상지표 [3]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3.1** 2030년까지 전 세계적인 산모사망 비율을 100,000건의 생존출산당 70건 미만으로 감축

**3.1.1** 모성사망비 [2]

**3.1.2**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비용 [1]

**3.2**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12건, 5세 미만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당 적어도 25건으로 감축하는 것을 지향

**3.2.1** 5세이하 아동 사망률 [1]

**3.2.2** 신생아 사망률 [1]

**3.3** 2030년까지 전염병인 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을 방지

**3.3.1** 성별, 연령별, 주요인구군별 감염되지 않은 인구 1,000명당 HIV/AIDS 신규 발생률 [2]

**3.3.2** 인구1,000명당 결핵발생률 [1]

**3.3.3** 인구1,000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1]

**3.3.4** 인구 1,000명당 B형 간염발생률 [2]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1]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 건강 및 복리 증진

**3.4.1** 심혈관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 사망 비율 [2]

**3.4.2** 자살사망률 [2]

**3.5** 마약 남용과 알코올의 해로운 이용을 포함한 약물 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3.5.1** 물질 남용 장애 치료(약물, 신경, 재활, 사후 서비스 등) 범위 [3]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알콜섭취량(국별로 정의된 기준에 따라) [1]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적인 사망과 상해 건수 반감(半減)

**3.6.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1]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목적을 포함한 성·생식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식 보건의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의 통합을 보장

**3.7.1** 현대적인 피임법을 충족하는 가임기 여성(15-49세)의 비중 [1]

**3.7.2** 각 연령층별 1,000명 여성 당 청소년 출산율(10-14세, 15-19세) [2]

**3.8** 모두를 위한 재무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이고 저렴한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과 대기·물·토양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상당히 감축

**3.a**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행을 강화

**3.b** 주로 개도국에 영향을 끼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유연성에 관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상의 조항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개도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저렴한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 제공

**3.c** 보건재원 및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내 보건인력의 고용, 개발, 훈련 및 보유를 상당히 증대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국가적·세계적 보건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위험 감축 및 관리 역량을 강화

**3.8.1** (재생산, 모성, 신생아, 아동보건, 감염병, 비전염성 질병, 보건서비스 역량 및 접근성을 포함한 추적 개입에 기반한 필수 서비스의 평균 보급률로 정의되는) 필수 보건서비스의 보급률 [3]

**3.8.2** 인구 1,000명당 의료보험이나 공중보건 시스템으로 보장받는 인구 수 [3]

**3.9.1** 가구 및 주변의 공기오염에 기인한 사망률 [1]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위생시설 및 위생행동 부재(안전하지 않은 WASH 서비스에 기인한 사망률) [2]

**3.9.3** 비의도적 중독(unintentional poisoning)에 기인한 사망률 [2]

**3.a.1** 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자의 연령표준화 현황 [1]

**3.b.1** 저렴한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이 가능한 인구의 비중 [3]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ODA 총액 [1]

**3.c.1** 보건인력 비율과 배치 [1]

**3.d.1** 국제보건규칙(IHR) 역량 및 보건긴급대비 [2]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4.1** 2030년까지 모든 소녀와 소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이끌어 내는 무상이고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

**4.1.1** (a) 학년 2/3 이수시점, (b) 초등졸업, (c) 고등교육 저학년 이수 시점에서 읽기와 수학에서 최소숙달기준을 달성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중(성별) [3]

**4.2** 2030년까지 초등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모든 소녀와 소년이 양질의 조기 아동 계발,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4.3** 2030년까지 대학을 포함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기술·직업·고등 교육에 대한 모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

**4.4** 2030년까지 고용,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한, 기능적·직업적 기술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수를 상당히 증대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근절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4.6** 2030년까지 모든 청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력과 수리력을 획득할 것을 보장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개발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보장

**4.a** 아동·장애·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4.b** 선진국 및 기타 개도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대

**4.c**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교사연수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자격 있는 교사의 공급을 상당히 증대

**4.2.1** 보건, 학습, 심리적 건강(well-being)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미만 아동의 비중(성별) [3]

**4.2.2** (공식 초등교육 시작 1년 전에) 체계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2]

**4.3.1** 지난 12개월 동안 정규/비정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성별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2]

**4.4.1** ICT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중(기술별) [2]

**4.5.1** 패리티 지수(성별, 도농, 소득수준 및 장애, 원주민, 분쟁영향 등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 [1/2/3]

**4.6.1** 특정 연령별로 기능적 (a) 문해 및 (b) 수리능력 숙련도가 적어도 일정수준을 달성한 인구 및 성별비율 [2]

**4.7.1**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i) 글로벌시민의식 교육과 (ii)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학생 평가의 모든 차원에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3]

**4.a.1** (a) 전기, (b) 수업 목적의 인터넷, (c) 수업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 및 교재, (e) 기초 식수, (f) 성별로 분리되어있는 기초위생시설 및 (g) 기초손씻기 시설(WASH 지표정의에 따른)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학교의 비율 [2]

**4.b.1** 학습분야 및 형태에 따른 장학금 ODA 규모 [1]

**4.c.1** 국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수준의 체계적인 자격전 및 재교육을 받은 (a) 유치원, (b) 초등학교, (c) 중등학교, (d) 고등학교 교사의 비율 [1]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 할례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을 근절

**5.4**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적 보호정책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구와 가족 내에서의 책임 분담을 증진함으로써, 무상돌봄과 가사노동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인식

**5.5** 정치·경제·공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생식 보건과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5.b** 여성권익신장 증진을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강화

**5.1.1** 양성평등과 반차별을 증진하고 강제하며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3]

**5.2.1** 지난 12개월동안 파트너(배우자 및 데이트 상대 포함)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 경험자 비중(연령별, 폭력의 형태별) [2]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서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의 비중(연령별, 장소별) [2]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여성의 비중 [2]

**5.3.2**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 받은 연령별 비중 [2]

**5.4.1** 성별, 연령별, 장소별 무보수의 집안일 및 양육에 할애하는 시간 비중 [2]

**5.5.1** 의회와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Tier 1/3]

**5.5.2** 여성경영진 비중 [1]

**5.6.1** 재생산권리, 피임도구 사용, 성관계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는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15-49세 여성 비중 [2]

**5.6.2** 성적/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49세 여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법률 및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수 [3]

**5.a.1** (a) 성별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중; (b) 총 토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3]

**5.a.2**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수 [3]

**5.b.1** 성별 휴대폰 보유 개인 비중 [1]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및 추적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중 [3]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비율 [1]

**6.2**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종식

**6.2.1**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 등을 포함한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비율 [1]

**6.3** 2030년까지 오염 감축, 유해 화학물 및 물질의 투기 근절과 방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반감(半減) 및 전 세계적인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의 상당한 증진을 통하여 수질 개선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수 비율 [3]

**6.3.2** 양호한 주변 수질을 갖춘 수계 비율 [3]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물 사용의 효율성을 상당히 증대하고,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수를 상당히 감축

**6.4.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사용 효율 변화 [3]

**6.4.2** 물 스트레스 수준: 가용한 담수자원 비율로서의 담수취수 [2]

**6.5**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초국경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이행

**6.5.1** 통합물관리(WRM) 이행 정도(0-100) [1]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체계를 가진 초국적 유역비율 [3]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암반 및 호수를 포함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

**6.6.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3]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 재이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한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 및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을 확대

**6.a.1** 정부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시설 관련 ODA 총액 [1]

**6.b** 물 및 위생 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6.b.1** 물과 위생시설 관리에 관한 운영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비율 [1]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 |  |   |
|--|---|
| <p><b>7.1</b> 2030년까지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p>  | <p><b>7.1.1</b> 전기접근성을 가진 인구비율 [1]</p> <p><b>7.1.2</b> 청정연료와 기술들을 주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1]</p>  |
| <p><b>7.2</b>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p>  | <p><b>7.2.1</b>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1]</p>   |
| <p><b>7.3</b>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두 배 증대</p>   | <p><b>7.3.1</b> 일차에너지와 GDP 차원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중도 [1]</p>                                       |
| <p><b>7.a</b>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진보되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p> | <p><b>7.a.1</b> 천만불 약정을 목표로 2020년부터 매년 동원되는 금액 [3]</p>                                    |
| <p><b>7.b</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를 위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p>             | <p><b>7.b.1</b> GDP의 비율로 측정되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및 지속가능개발서비스인프라와 기술을 위한 금융거래 해외직접투자 규모 [3]</p> |

**목표 8.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 |   |  |
|---|--|
| <p><b>8.1</b> 국가별 상황에 따라 1인당 경제성장률 지속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에서는 최소 연 7%의 국내총생산 성장을 지속</p>  | <p><b>8.1.1</b>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1]</p>   |
| <p><b>8.2</b> 고부가가치 부문 및 노동집약적 부문에 초점을 두는 등 다변화, 기술 개선 및 혁신을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p>   | <p><b>8.2.1</b> 취업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1]</p>  |
| <p><b>8.3</b>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을 통하여 미소(微小)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장려</p>             | <p><b>8.3.1</b> 성별 비농업분야 비공식고용 비율 [2]</p>  |
| <p><b>8.4</b>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인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p> | <p><b>8.4.1</b> 물질발자국(MF), GDP 대비 및 1인당 MF [3]</p> <p><b>8.4.2</b> 국내물질소비(DMC), GDP 대비 및 1인당 DMC [2]</p> |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달성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가 아닌 청년 비율을 상당히 감축

**8.7** 강제노동 퇴치, 현대적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종식 및 소년병 징집·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

**8.8**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관광 진흥 정책을 고안하고 이행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

**8.a**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 체계(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을 통하여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 증대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전략을 개발·운용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

**8.5.1** 직업별, 성별, 장애여부에 따른 시간당 소득 [2]

**8.5.2**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실업률 [1]

**8.6.1** 15-24세 청(소)년 중 교육 또는 고용,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NEET) 인구 비율 [1]

**8.7.1** 성별, 연령별 아동노동 아동의 수 및 비율 [1]

**8.8.1** 성별, 이민신분별 치명 또는 비치명적 직업관련 부상 빈도비율 [1]

**8.8.2** 성별, 이민신분별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반하여 (단체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 증대 [1]

**8.9.1** 전체 GDP에 대한 비율로 측정된 관광의 GDP 기여도 및 성장률 [2]

**8.9.2** 성별 전체 일자리에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으로서 일자리의 수와 일자리 증가율 [2]

**8.10.1** 성인 100,000명당 상업은행 지점과 ATM 수 [1]

**8.10.2** 15세 이상 성인 중 은행, 기타 금융기관, 또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 비율 [1]

**8.a.1** 무역을 위한 원조(ATF) 약정 및 배분 [1]

**8.b.1** 국가예산과 GDP에서 전체 사회보고 및 고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정부지출 비율 [3]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9.1**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에 초점을 두고, 경제개발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초국경적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양질의 신뢰성 있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개발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용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상당히 증대하며, 최빈개도국에서는 동 비율을 두 배 증대

**9.3** 특히 개도국에서 소규모 산업체 및 기타 기업의 저렴한 신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들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을 증진

**9.4** 2030년까지 자원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청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산업 과정을 더 많이 채택하며, 모든 국가가 각국의 능력에 따라 행동을 취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부여

**9.5** 과학적 조사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혁신 장려 및 1백만 명 당 연구·개발 종사자 수와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의 상당한 증대 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산업 부문의 기술역량을 개선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도국에 대한 금융적·기술적·기능적 지원 강화를 통하여 개도국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촉진

**9.b** 특히 산업 다변화와 상품에 대한 가치 부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환경의 보장 등을 통하여 개도국에서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

**9.c**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증대하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이고 저렴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9.1.1** 사계절도로(all season road)로 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농촌인구 비율 [3]

**9.1.2** 교통수단별 승객 및 운송량 [1]

**9.2.1** GDP와 1인당 GDP 상 제조부가가치(MVA) 비율 [1]

**9.2.2**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 고용 비중 [1]

**9.3.1** 전체 산업부가가치 중 중소기업의 비중 [3]

**9.3.2** 융자가 있거나 여신한도를 보유한 중소기업 비율 [3]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 [1]

**9.5.1** GDP 중 R&D 지출 [1]

**9.5.2** 거주자 백만명당(전일제) 연구인력 [1]

**9.a.1** 인프라에 활용된 전체 국제공적지원(ODA 및 기타 공공자금) [1]

**9.b.1** 전체 부가가치 중 중상위 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2]

**9.c.1** 기술별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인구 비율 [1]

##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 10.1 2030년까지 하위 40% 인구의 소득 성장을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
  - 10.1.1 전체 인구 또는 하위 40%의 가구지출 또는 1인당 소득의 증대율 [1]
- 10.2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증진
  - 10.2.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중간소득의 50%이하의 삶을 사는 인구의 비율 [3]
- 10.3 차별적 법, 정책 및 관행의 근절 및 이와 관련한 적절한 입법, 정책 및 행동의 진흥 등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
  - 10.3.1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동안 개인적으로 차별받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reporting) 인구의 비율 [3]
- 10.4 특히 재정·임금·사회보호 정책 등의 정책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 확대를 달성
  - 10.4.1 GDP중 임금과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노동 비중 [1]
- 10.5 글로벌 금융 시장 및 기관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
  - 10.5.1 금융건전성지수 [3]
- 10.6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고 합법적인 기관이 되도록, 글로벌 국제경제·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
  - 10.6.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의결권 비율 [1]
-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하여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의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
  - 10.7.1 이민국에서의 연소득 중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고용비용 [3]
  - 10.7.2 잘 관리되는 이민정책을 이행해온 국가의 수 [3]
- 10.a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 대우 원칙 이행
  - 10.a.1 최빈국과 무관세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선 비율 [1]
- 10.b 국가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큰 국가, 특히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공적개발 원조와 자금 거래를 장려
  - 10.b.1 ODA, FDI 및 기타 자금 등 자금의 종류, 수원국별, 공여국별 개발을 위한 전체 자원 동원[1(ODA)/2(FDI)]
-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의 거래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 비용이 5%를 초과하는 송금 경로를 철폐
  - 10.c.1 송금총액에서 송금비용의 비율 [3]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11.1.1** 빈민가, 무허가 또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2]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안전을 개선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

**11.2.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 [2]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 계획·관리 역량을 강화

**11.3.1** 인구성장을 대비 토지소모비율 [2]

**11.3.2** 정기적이고, 인구구성비에 맞추어 운영되는 도시 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구조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비율(%) [3]

**11.4** 세계 문화·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

**11.4.1** 유산의 종류(문화, 자연, 복합, 세계유산센터 등재), 정부 수준(중앙, 지역, 시군), 지출종류(운영비/투자) 및 민간자금 종류(기부, 민간 비영리, 스폰서) 등에 따라 분류된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보호에 지출되는 1인당 총(공공 및 민간) 지출액 [3]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망자 수 및 피해자 수를 상당히 감축하고,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하여 재난에 의해 발생하는 국내 총생산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상당히 감축

**11.5.1** 인구 100,000당 재난의 영향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수 [2]

**11.5.2** 주요 인프라에 대한 재난피해 및 기초서비스 붕괴를 포함하여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2]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한 주의 등을 통하여 도시의 부정적인 1인당 환경 영향을 감축

**11.6.1**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하게 최종 처리되는 도시 고체폐기물의 비율 [2]

**11.6.2** 도시 내(인구가중치 적용) PM2.5 및 PM10 등으로 표기되는 연중 미세먼지 평균 수준 [1]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공공의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11.7.1**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되어있는 공용 공간의 평균 비중 [3]

**11.7.2** 성별, 연령별, 장애의 정도 및 발생장소 별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추행의 피해자 비율 [3]

**11.a** 국가적·지역적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결을 지원

**11.a.1** 인구증가예측과 소요자원을 통합하여 수립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도시규모별) [3]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재난 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계획을 채택·이행하는 도시와 정주지의 수를 상당히 증대하고, 2015–2030 센다이 재난위험감감 체계(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관리를 개발·이행

**11.c**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의 자재를 사용하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 최빈개도국을 지원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2015–2030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궤를 같이 하는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3]

**11.b.2** 국가 전체와 지방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보유한 국가의 수 [2]

**11.c.1** 최빈국 내 현지 자재들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효율적인 건축과 재건축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규모 [3]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12.1** 개도국의 개발과 능력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행동을 취하고 선진국이 주도하면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이행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달성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전 세계적인 1인당 식량 낭비를 반감(半減)하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생산·공급 과정의 식량 손실을 감축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적 체계에 따라 화학물질과 모든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달성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 물 및 토양에 대한 배출을 상당히 감축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감축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키도록 장려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을 진흥

**12.1.1** 지속가능소비 및 생산(SCP) 국가이행계획 또는 국가정책에 우선순위 및 목표로 SCP가 주류화되어있는 국가의 수 [3]

**12.2.1** 물질발자국(MF), GDP 대비 및 1인당 MF [3]  
**12.2.2** 국내물질소비(DMC), GDP 대비 및 1인당 DMC [2]

**12.3.1** 글로벌 식품손실 지수 [3]

**12.4.1**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 각각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다하는 당사국의 수 [1]

**12.4.2** 1인당 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처리방법 [3]

**12.5.1** 국가 전체의 재활용비율(ton) [3]

**12.6.1**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3]

**12.7.1**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정책과 실행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 [3]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지향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관광에 미치는 지속가능개발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이행

**12.c** 개도국의 특정한 수요·여건을 온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도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제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

**12.8.1** (i) 글로벌 시민교육과 (ii) 기후변화교육을 포함한 지속가능개발교육이 국가 (a) 교육정책, (b) 교과과정, (c) 교사 교육 및 (d) 학생 평가에 주류화 정도 [3]

**12.a.1** SCP 및 환경친화적 기술관련 R&D 부문 개발도상국 지원총액 [3]

**12.b.1** 모니터링과 평가 기제가 있는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정책, 이행된 실행계획의 수 [3]

**12.c.1** GDP 단위 당(생산과 소비) 화석연료 보조금 액수 및 화석연료에 대한 총 국가지출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3]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축 및 조기 경보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및 인적·제도적 역량 개선

**13.1.1** 인구 100,000당 재난의 영향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수 [2]

**13.1.2** 국가 전체와 지방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보유한 국가의 수 [2]

**13.2.1** 식량생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회복력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된 정책/전략/계획(국가적응계획, 국가적으로 결정된 기여금, 국민소통, 격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보고서 등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운용하는 것에 관해 논의해온 국가의 수 [3]

**13.3.1** 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 경보 등을 초등, 중고 등, 상급 교육과정에 통합한 국가의 수 [3]

**13.3.2** 완화, 적응, 기술이전, 개발 이행을 위한 제도, 시스템, 개인의 역량강화를 논의해 온 국가의 수 [3]

**13.a** 의미 있는 완화 조치와 이행에 관한 투명성의 맥락에서 개도국 필요에 대응 및 가급적 조속한 출자를 통한 녹색기후기금의 온전한 운용을 위하여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000억달러를 공동 동원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선진국 당사국의 공약을 이행

**13.b** 여성, 청년 및 지역·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

**13.a.1** 2020년까지 1,000억달러 동원 [3]

**13.b.1** 여성, 청소년, 지방,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하에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기술, 역량강화를 비롯한 특화된 지원을 받고 있는 최빈국 및 중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수 [3]

**목표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14.1**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 및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지 기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히 감축

**14.2** 2020년까지 회복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보호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양을 만들기 위하여 동 생태계의 복구를 위한 행동을 실시

**14.3** 모든 수준에서 과학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에 대응

**14.4**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지속가능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대한 기간에 어족자원을 복원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관행을 종식시키며,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

**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용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해안 및 해양 지역의 최소 10%를 보존

**14.6**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불가결한 일부가 되어야 함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며, 이와 같은 보조금의 신규 도입을 자제

**14.1.1** 해안부영양화 지수(ICEP) 및 플라스틱 부유성 폐기물 농도 [3]

**14.2.1**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3]

**14.3.1** 합의된 대표시료채취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pH) [3]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내의 어족비율 [1]

**14.5.1** 해양 보호구역 범위 [1]

**14.6.1** 국가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기제들을 이행 차원에서의 진척수준 [3]

**14.7** 2030년까지 수산업, 양식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을 통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

**14.a** 대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개도국, 특히 군소도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개발에 대한 해양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기준과 지침(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Criteria an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을 고려하여, 과학적 지식 증대, 연구역량 개발 및 해양기술 이전

**14.b**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 자원·시장에 대한 접근 제공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158항에서 환기된 대로,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반영된 바와같은 국제법을 이행함으로써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

**14.7.1** 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 및 모든 국가에서 GDP 중 지속가능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3]

**14.a.1** 전체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분야 연구에 배정되는 비율 [3]

**14.b.1** 국가별 소규모 영세 어업의 접근권(access rights)을 인지하고 보호하는 법/규제/정책/제도의 도입 차원에서 의 진척 수준 [3]

**14.c.1** 해양과 그 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법/정책/제도를 통해 UNCLOS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해양관련 장치들을 비준, 적용,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의 수 [3]

**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 하의 의무에 따라 육지·내륙 담수생태계 및 그 서비스, 특히 산림·습지·산·건조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

**15.2**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의 이행을 진흥하고, 산림전용을 중지시키며,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신규 조림과 재조림을 상당히 증대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가뭄·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한 황폐화된 토지와 토양을 복구하며, 토지황폐화 중립 세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에 필수적인 편익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지생태계 보존을 보장

**15.1.1** 총 육지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1]

**15.1.2** 생태계 유형 별 보호구역에 의해 보호되는 육상 및 담수 생태계 주요 장소(sites)의 비율 [1]

**15.2.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진척도 [3]

**15.3.1** 전체 육지 중 황폐화된 토지의 비율 [3]

**15.4.1** 산중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범주 [2]

**15.4.2** Mountain Green Cover Index [2]

**15.5** 자연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지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 예방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진흥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진흥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급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제품 수요와 공급에 대응

**15.8** 2020년까지 외래침입종 유입 예방과 함께 이들이 육지·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우선순위를 통제하거나 퇴치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적·지역적 계획, 개발 과정, 빈곤 감축 전략 및 회계에 통합

**15.a** 생물다양성·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상당히 증대

**15.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상당한 재원을 동원하고, 보존·재조림 목적을 포함하여 개도국들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

**15.c**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계 기회 추구 역량 증대 등을 통하여 보호종의 밀렵·밀매 방지 노력에 대한 글로벌 지원을 강화

**15.5.1** 멸종위기 지수 [2]

**15.6.1** 공정하고 공정한 혜택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한 국가의 수 [3]

**15.7.1** 밀렵되거나 불법으로 포획되어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비율 [2]

**15.8.1** 급속히 확산되는 외래종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법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배분한 국가의 비율 [3]

**15.9.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2 (Aichi Biodiversity Target 2)에 따른 국내 목표 수립 진척 상황 [3]

**15.a.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공공지출 및 ODA [1/3]

**15.b.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공공지출 및 ODA [1/3]

**15.c.1** 밀렵되거나 불법으로 포획되어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비율 [1]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히 감축

**16.1.1** 성별, 연령별 고의적 살인 피해자 수(인구 100,000 명당) [1]

**16.1.2** 성별, 연령별, 원인별 인구 100,000명당 분쟁 관련 사망자 수 [3]

**16.1.3**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의 피해자 비율 [2]

**16.1.4** 거주지 주변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2]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 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 동안 보육자로부터 신체적 처벌이나 정신적 공격을 경험한 바 있는 1-17세 아동/청소년의 비율 [3]

**16.2.2** 성별, 연령별, 착취의 유형별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인구 100,000명당) [2]

**16.2.3** 18-29세 사이 남녀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인구 비율 [2]

**16.3**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6.3.1** 관련 당국 또는 기타 공식적인 분쟁조정 매커니즘에 지난 12개월 동안 피해사례를 신고한 폭력피해자의 비율(범죄신고율) [2]

**16.3.2** 전체 수감인구 중 판결없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 [1]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무기 거래를 상당히 감축하고, 도난자산 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방지

**16.4.1** 불법자금의 유입과 유출의 총 가치(현재 US\$ 가치 기준) [3]

**16.4.2** 국제기준 및 법적 근거따라 보고 및 관리되고 있는 입류 소화기(small arms) 및 경화기(light weapons) [2]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히 감축

**16.5.1**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공무원에 접촉한 적이 있으면서 뇌물을 주었거나 뇌물을 줄 것을 요구받은 인구의 비율 [2]

**16.5.2**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1회 이상 공무원에 접촉한 적이 있으면서 뇌물을 주었거나 뇌물을 줄 것을 요구받은 민간기업의 비율 [2]

<p><b>16.6</b>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p>	<p><b>16.6.1</b> 섹터별(또는 예산코드별) 승인된 예산 중 1차정부 지출의 비율 [1]</p> <p><b>16.6.2</b> 가장 최근 이용했던 공공서비스에 만족한 인구 비율 [3]</p>
<p><b>16.7</b> 모든 수준에서 호응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p>	<p><b>16.7.1</b> 국내 전체 대비 공공기관(중앙/지방의 입법부, 공공서비스, 사법부)에서의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인구 집단별) 지위 [3]</p> <p><b>16.7.2</b>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인구집단별 의사결정과정이 포용적이고 수용적(responsive)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 [3]</p>
<p><b>16.8</b>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p>	<p><b>16.8.1</b> 국제기구 내 개발도상국 회원국 및 투표권의 비율 [1]</p>
<p><b>16.9</b> 2030년까지 출생신고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 부여</p>	<p><b>16.9.1</b> 5세 이하 아동 중 출생신고된 비율 [1]</p>
<p><b>16.10</b>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p>	<p><b>16.10.1</b> 지난 12개월 간 언론인, 언론 관계자, 노조 활동가, 인권운동가에 대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의 수 [3]</p> <p><b>16.10.2</b>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위해 헌법상, 법적이거나 정책적인 보장 방식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2]</p>
<p><b>16.a</b> 특히 개도국에서 폭력 예방 및 테러리즘·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 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등을 통한 관련 국가 기관을 강화</p>	<p><b>16.a.1</b>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상의 독립된 국가인권 기구의 존재여부 [1]</p>
<p><b>16.b</b>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차별적 법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p>	<p><b>16.b.1</b> 국제인권법 상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차원에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음을 신고한 인구비율 [3]</p>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p><b>17.1</b>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자원 동원 강화</p>	<p><b>17.1.1</b> 재원별 GDP 대비 총 정부수익 [1]</p> <p><b>17.1.2</b>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내예산 비율 [1]</p>
---	--

<p><b>17.2</b> 개도국에 대한 ODA/GNI 0.7%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 0.15~0.2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많은 선진국의 공약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자국의 공적 개발원조 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GNI의 최소 0.20%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p>	<p><b>17.2.1</b> 최빈국 및 전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ODA/GNI [1]</p>
<p><b>17.3</b>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자원 동원</p>	<p><b>17.3.1</b> 총 국내예산 중 FDI와 ODA, 남남협력의 비율 [1] <b>17.3.2</b> 전체 GDP 중 해외송금 비율(US\$ 기준) [1]</p>
<p><b>17.4</b> 적절한 경우 채권 금융, 채무 탕감 및 채무 재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 채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고, 채무 위기 완화를 위하여 고채무빈국의 외채 문제에 대응</p>	<p><b>17.4.1</b>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중 부채서비스의 비율 [1]</p>
<p><b>17.5</b>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 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p>	<p><b>17.5.1</b> 최빈국에 대한 투자촉진 환경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3]</p>
<p><b>17.6</b>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남북·남남·삼각 형태의 지역·국제 협력 및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유엔 수준에서 현존 메커니즘 간 조율 개선 및 글로벌 기술 촉진 메커니즘 등을 통하여 상호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식 공유를 강화</p>	<p><b>17.6.1</b> 협력의 형태별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합의 또는 프로그램의 수 [3] <b>17.6.2</b> 속도별 100명당 인터넷 광대역 사용자 [1]</p>
<p><b>17.7</b> 상호 합의에 따라 양허·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p>	<p><b>17.7.1</b> 개발도상국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된 자금의 총액 [3]</p>
<p><b>17.8</b>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강화</p>	<p><b>17.8.1</b>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 [1]</p>
<p><b>17.9</b> 남북·남남·삼각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지원할 개도국들의 효과적·선별적인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p>	<p><b>17.9.1</b> 개발도상국에 약정된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화 가치(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한 지원 포함) [1]</p>
<p><b>17.10</b>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하의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p>	<p><b>17.10.1</b> 전세계 가장 관세평균 [1]</p>
<p><b>17.11</b>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두 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상당히 증대</p>	<p><b>17.11.1</b> 전세계 수출 중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점유비율 [1]</p>

**17.12**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가능한 특히 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원활화에 대한 기여 보장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일치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의 적시 이행을 실현

**17.13** 정책 조율 및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하여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17.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17.15** 빈곤 근절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 국의 정책 자율성과 리더십을 존중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을 동원·공유하는 다주체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17.17** 파트너십들의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민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

**17.18** 소득,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상당히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을 강화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보완할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성과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 역량 구축을 지원

**17.12.1** 개발도상국, 최빈국, 중소도서개발도상국들에 부과된 평균 관세 [1]

**17.13.1** 거시경제 대시보드 [3]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매킨지움이 있는 국가의 수 [3]

**17.15.1** 개발협력 주체가 제공한 기획 관련 도구 및 국가 보유 결과 프레임워크의 사용정도 [2]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과정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 [2]

**17.17.1**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약정한 US\$ 총액 [3]

**17.18.1** 국가통계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생산된, 세부목표에 따라 완전히 세분화된 지속가능개발 지표의 비율 [3]

**17.18.2** 국가통계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에 따른 국가통계 법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수 [3]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이 있는 국가 수(재원별) [1]

**17.19.1** 개발도상국에서 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

**17.19.2** a) 지난 10년간 인구 및 가구센서스를 적어도 1회 실시하고 b) 출생신고 100% 및 사망신고 80%를 달성한 국가의 비율 [1]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 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